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4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4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4
III. 경영참고사항	5
1. 사업의 개요.....	5
가. 업계의 현황	5
나. 회사의 현황	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7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이그잭스
대 표 이 사 : 조근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56
(전 화) 054-465-7395
(홈페이지)<http://www.exa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조준영
(전 화) 054-465-7395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 및 상법 제36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집일시 : 2016년 08월 03일(수) 오전 9시
2. 소집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56 (주)이그잭스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 나. 대리행사 : 위임장(인적사항 및 인감날인) 1부,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문두경 (출석률: 25.0%)	최준영 (출석률: 0%)
			찬 반 여부	찬 반 여부
1	2016.01.15	제17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내부 결산 승인의 건	불참	-
2	2016.03.11	제1호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불참	-
3	2016.03.14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신규 발행의 건	참석(찬성)	-
4	2016.06.21	제1호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불참

※ 사외이사 최준영은 2016.03.30에 개최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	1,5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이사의 보수에 대한 금액이며, 당사는 사외이사에 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일동케미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인, 계열회사)	매입	2016.01.01~2016.03.31	839	1.5

상기 비율은 직전사업연도(제17기)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디스플레이 산업

2000년대 이후 TV, 모니터, 노트북, 모바일기기를 위주로 고속성장하던 디스플레이산업은 2011년 디스플레이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V, 모니터시장의 포화, 대형 LCD 생산 설비 대규모 투자, 유럽 및 미국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안등으로 인하여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TV, 모니터 수요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기기에 대한 수요는 2011년부터 급증하여 모바일 시장은 고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모바일기기로부터 시작된 OLED 시장은 제조사의 대규모투자와 OLED 수요증가에 따라 주력제품이 모바일기기에서 TV로 대형화 되는 추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OLED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OLED의 적정 수율과 높은 가격 때문에 대중화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LCD기술과 공존하며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쇄전자 산업

인쇄전자란 프린팅 공정기법을 활용하여 전도, 절연, 반도체 등 다양한 성질을 갖는 Ink 및 paste(점성 액체)를 필름, 유리, 직물, 종이, 절연기판 등에 인쇄하여 전자소자 및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인쇄전자 산업은 산업 Cycle상 도입국면에 진입하는 성장산업으로 대표적인 친환경산업입니다.

인쇄전자 산업 초기에는 기존 공법을 대체하는 형태로 활용되었으나, 인쇄기술을 활용한 자체 Device들이 생산되면서 단순한 공정기술에서 하나의 산업으로의 Level-up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약 30억 달러(원화 환산: 약 3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2013년은 약 300억 달러 (원화 환산: 약 36조 원), 2019년에는 약 570억 달러(원화 환산: 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3,295억원 규모(HMC투자증권 추정)로 솔라셀, TSP 전극 재료용 실버페이스트 등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TFT-LCD용 Color Filter 및 Black Matrix, 핸드셋의 TSP 전극 및 ITO 패터닝, PV 전극 패터닝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쇄전자 공정 기술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초기 국면의 인쇄전자는 이처럼 단순히 기존 공법을 대체하는 공정기술로서의 도입이 예상되지만, 향후 인쇄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DTechEx에 의하면 인쇄전자는 2020년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큰 수요를 창출할 시장으로는 OLED Display, OLED 조명 및 PV 시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E-Paper를 포함한 다양한 Flexible Display Device 의 출현 및 인쇄 메모리 산업 발달로 인쇄전자를 활용한 자체 Device들이 개발되어 인쇄전자는 2020년 이후에도 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이끄는 미래 주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NFC안테나 산업

NFC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의 하나로 13.56M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모듈로서, 10c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NFC 기술은 모바일 결제, 슈퍼마켓의 물품정보 제공, 여행정보 전송, 출입통제용 잠금장치 등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향후 금융, 결제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료조사 전문기관인 HIS에 따르면 2015년에는 NFC탑재 스마트폰이 5.75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NFC탑재 스마트폰이 11.7억대에 달하여 전체 스마트폰의 64%를 차지하여 NFC가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성장하였고, 삼성전자에서 2011년에 출시한 갤럭시S2에 NFC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전략모델에는 모두 NFC를 탑재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주력시장을 북미, 유럽 외에 중국과 인도 등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NFC안테나가 탑재되는 스마트폰을 전략모델에서 보급형모델로까지 확장하면서 NFC안테나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공급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NFC 기술은 정부의 사물인터넷분야 육성정책에 따라 사물인터넷의 필수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사가 아이폰6에 NFC기능을 이용한 모바일결제방식 애플페이를 발표하면서 NFC가 핀테크를 주도할 기술로 자리잡아가는 등 응용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상용화되는 추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전자소재 사업

당사는 Display 공정용 Chemical인 세정액, 현상액, 식각액, 박리액 및 Display용 전자재료인 Column Spacer, UV Resin 등을 생산하여 국내 주요 Display 제조사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지속적인 기술향상을 통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해 왔다시피, 당사도 오랜 공급에 따른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기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는 Oxide TFT 제조에 필요한 공정용 케미칼 BOE(Buffered Oxide Etchant)를 개발하고 제조사에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UHD LCD/OLED TV 성장세와 더불어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옥사이드(Oxide)방식은 기존 a-si (amorphous silicon)방식 대비 전하이동속도가 빨라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최근 LCD 제조사들이 Oxide TFT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LCD 액정 패널의 시인성(난반사 제거)을 높여주고 패널의 외부충격을 완화해주는 전자재료인 OCR(Optical Clear Resin)을 최근 개발 완료하여 양산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LCD 액정 패널의 제조사들이 구매하는 OCR은 해외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의 여지가 상당히 크고,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로까지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전자부품 사업

□ NFC안테나 사업

당사는 2010년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NFC 안테나 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 6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와 NFC 안테나를 탑재하는 스마트폰의 종류 확대에 따라 당사의 공급량은 매년 급증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NFC 개발 및 제조 전문회사인 (주)글로벌알에프를 인수, 합병하면서 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함은 물론 기술력과 영업망도 흡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NFC안테나에 무선충전 등 복합기능이 추가된 복합형 NFC안테나를 개발완료하여 공급하기 위해 영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인쇄전자 사업

당사는 인쇄전자산업의 핵심재료인 전도성 잉크 및 전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가 개발한 전도성 잉크, 전도성 페이스트는 큰 카테고리상으로는 silver ink에 속하며, 입자가 없는(particle-less) 속성을 가집니다. Particle이 없어 전극밀도가 높고, 저항이 낮아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경화온도 범위가 넓어 다양한 기판(종이, PET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내열성을 특징으로 하여 Soldering 공정 등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여 FPCB 및 SMT(Surface Mounter Technology) 등에 활용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전도성 잉크, 페이스트 제조기술과 투자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쇄전자 Application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인쇄전자 분야 중프린팅방식의 RFID태그를 제조하여 타이어, 제약, 주류, 축산물, 폐기물, 의류, 승용차요일제, 혈당측정기용 스트립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필수제품인 센서(Sensor)를 인쇄전자 기술로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에서 전자부품사업인 NFC사업부문과 RFID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전자소재사업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은 사업을 특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분할 계획서

주식회사 이그잭스(이하 “분할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1. 분할의 목적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에서 전자부품사업인 NFC사업부문과 RFID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전자소재사업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은 사업을 특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상법 제530조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회사	(주)이그잭스	전자소재사업부문	코스닥 상장
단순분할신설회사	(주)이그잭스아이오티	전자부품사업부문 (NFC사업부문, RFID사업부문)	비상장

(2) 분할기일은 2016년 09월 05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 중에서는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채무만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 우발채무 등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 우발채권 등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8)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 일정

구분	일정
분할 이사회결의일	2016년 06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년 06월 21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6년 07월 06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016년 08월 0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16년 08월 03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6년 08월 04일 ~ 2016년 09월 04일
분할기일	2016년 09월 05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2016년 09월 06일
분할등기(예정)일	2016년 09월 07일

※ 상기 일정은 관련 법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공고로 갈음하고자 함.

4. 단순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 주식회사 이그엑스아이오티 (영문) Exax IoT Co.,Ltd.
목적	1.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본점의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5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결산기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보통주식 200,000주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배정한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1,000,000,000원
준비금	16,337,774,881원

※ 준비금은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 준비금은 분할기일에 이전 대상자산이 확정될 예정임.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 자산”이라 한다)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 혹은 실제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자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

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 1】 분할채무상대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 호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8)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중에서는 “【첨부3】 분할회사의 연대 변제책임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16년 09월 05일로 한다.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①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약력	비고
대표이사	황기순	1969.07.19	(주)이그잭스 경영관리팀장	상근
사내이사	성현기	1968.02.04	(주)이그잭스 이사	상근
사내이사	조준영	1978.10.07	(주)이그잭스 경영지원팀장	상근
사내이사	황보정	1971.07.04	(주)이그잭스 IoT팀장	상근
감사	김영규	1968.01.14	(주)이그잭스 감사	비상근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구분	보수한도	비고
이사	500,000,000원	-
감사	50,000,000원	-

※ 임원의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할 예정임.

※ 최초 사업연도의 임원퇴직금지규정은 분할회사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1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본 분할계획서의 “【첨부4】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과 같다.

5.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16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 호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③ 이전대상 자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이 정부기관, 제3자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기타 산업재산권 등 분할대상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도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된다.

【분할 전·후 요약 재무상태표 (2016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자산			
Ⅰ.유동자산	18,346,383,578	7,854,719,618	10,491,663,960
Ⅱ.비유동자산	40,829,875,066	44,128,945,180	14,038,707,767
자산총계	59,176,258,644	51,983,661,798	24,530,371,727
부채			
Ⅰ.유동부채	27,345,991,974	22,534,138,555	4,811,853,419
Ⅱ.비유동자산	13,303,360,516	10,922,617,089	2,380,743,427

부채총계	40,649,352,490	33,456,755,644	7,192,596,846
자본			
I.자본금	9,096,295,500	9,096,295,500	1,000,000,000
II.주식발행초과금	35,021,822,368	35,021,822,368	16,337,774,881
III.기타자본항목	(13,787,093,152)	(13,787,093,152)	-
IV.결손금	(11,804,118,562)	(11,804,118,562)	-
자본총계	18,526,906,154	18,526,906,154	17,337,774,881

※ 상기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6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별도재무제표임.

※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2016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에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분할 기일(2016년 09월 05일) 현재의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변동사항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분할계획서는 2016년 08월 03일 개최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 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 ① 분할회사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② 분할일정
-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④ 분할 당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⑤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
- ⑥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 및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예정이다.

(3)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를 포함함)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 없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을 포함함)를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6)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공고로 같음한다.

(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구분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8) 풋옵션 등 계약체결 여부

“해당사항 없음”

(9)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016년 06월 21일

주식회사 이그잭스

대표이사 조근호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주)이그잭스 (분할회사)	(주)이그잭스 (존속회사)	(주)이그잭스아이오티 (단순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	18,346,383,578	7,854,719,618	10,491,663,960
현금및현금성자산	3,378,319,740	2,378,319,740	1,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615,195,125	3,989,454,515	5,625,740,610
기타금융자산	320,000,000	320,000,000	0
재고자산	4,943,716,704	1,084,225,806	3,859,490,898

당기법인세자산	4,738,880	4,738,880	0
기타유동자산	84,413,129	77,980,677	6,432,452
비유동자산	40,829,875,066	44,128,942,180	14,038,707,76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4,142,333	228,288,000	405,854,333
기타금융자산	1,387,746,204	237,746,204	1,150,0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206,983,561	17,337,774,881	206,983,561
유형자산	31,115,502,125	23,384,271,531	7,731,230,594
무형자산	5,444,930,609	900,291,330	4,544,639,279
기타비유동자산	6,000,000	6,000,000	0
이연법인세자산	2,034,570,234	2,034,570,234	0
자산총계	59,176,258,644	51,983,661,798	24,530,371,727
유동부채	27,345,991,974	22,534,138,555	4,811,853,4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673,582,618	2,033,942,603	3,639,640,015
단기차입금및사채	21,496,547,933	20,336,547,933	1,160,000,000
기타유동부채	175,861,423	163,648,019	12,213,404
비유동부채	13,303,360,516	10,922,617,089	2,380,743,427
장기차입금및사채	11,915,215,040	10,152,415,040	1,762,800,000
확정급여부채	1,382,133,491	764,190,064	617,943,427
기타비유동부채	6,011,985	6,011,985	0
부채총계	40,649,352,490	33,456,755,644	7,192,596,846
자본금	9,096,295,500	9,096,295,500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5,021,822,368	35,021,822,368	16,337,774,881
기타자본항목	(13,787,093,152)	(13,787,093,152)	0
이익잉여금	(11,804,118,562)	(11,804,118,562)	0
자본총계	18,526,906,154	18,526,906,154	17,337,774,881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대상 자산목록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액
I.유동자산		10,491,663,960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품 사업부문 예금 등	1,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625,740,610
외상매출금	부품 사업부문 매출채권	4,351,339,298
대손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매출채권 충당금	(2,714,209)
받을어음	부품 사업부문 매출채권	2,640,000

단기대여금	부품 사업부문 대여금	1,929,579,454
대손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대여금 총당금	(655,103,933)
재고자산		3,859,490,898
상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상품)	228,860,655
평가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상품) 총당금	(92,166,478)
제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제품)	1,819,509,479
평가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제품) 총당금	(299,794,291)
재공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재공품)	454,907,160
평가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재공품) 총당금	(77,191,514)
원재료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원재료)	2,406,233,297
평가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재고자산(원재료) 총당금	(580,867,410)
기타유동자산		6,432,452
선급금	부품 사업부문 선급금	2,516,804
선급비용	부품 사업부문 선급비용	3,915,648
II.비유동자산		14,038,707,76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05,854,333
임차보증금	부품 사업부문 임차보증금(사무실등)	405,854,333
외상매출금	부품 사업부문 매출채권_비유동	502,236,254
대손충당금	부품 사업부문 매출채권_비유동 총당금	(502,236,254)
기타금융자산	부품 사업부문 장기금융상품	1,150,0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부품 사업부문 지분법적용주식(Exax Vina)	206,983,561
유형자산		7,731,230,594
기계장치	부품 사업부문 기계장치	15,583,959,312
감가상각누계액	부품 사업부문 기계장치 감가누계액	(8,641,952,323)
국고보조금	부품 사업부문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294,255,986)
공구와기구	부품 사업부문 차량운반구	2,272,061,001
감가상각누계액	부품 사업부문 차량운반구 감가누계액	(1,336,369,380)
집기비품	부품 사업부문 비품	367,480,405
감가상각누계액	부품 사업부문 비품 감가누계액	(227,907,436)
시설장치	부품 사업부문 시설장치	22,200,000
감가상각누계액	부품 사업부문 시설장치 감가누계액	(13,984,999)
무형자산		4,544,639,279
산업재산권	부품 사업부문 산업재산권(특허권)	112,868,837
영업권	부품 사업부문 영업권	2,709,743,264
개발비	부품 사업부문 개발비	1,722,027,178
자산 총계		24,530,371,727

(2) 승계대상 부채목록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액
I.유동부채		4,811,853,4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부품 사업부문 매입채무	3,639,640,015
매입채무	부품 사업부문 매입채무	2,515,340,479
지급어음	부품 사업부문 매입채무(지급어음)	510,760,550
미지급금	부품 사업부문 미지급금	598,792,270
미지급비용	부품 사업부문 미지급비용	14,746,716
단기차입금및사채	부품 사업부문 단기차입금	1,160,000,000
기타유동부채	부품 사업부문 선수금	12,213,404
II.비유동부채		2,380,743,427
장기차입금및사채	부품 사업부문 장기차입금	1,762,800,000
확정급여부채	부품 사업부문 퇴직급여충당부채	617,943,427
부채 총계		7,192,596,846

【첨부3】 분할회사의 연대 변제책임대상 채무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 중에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채권자
장·단기차입금	2,922,800,000	자산담보부차입금	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매뉴팩처링코리아주식회사
미지급비용	12,359,250	발생이자	

※ 단순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RFID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첨부4】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그잭스아이오티라 한다. 영문으로는 Exax IoT Co.,Ltd.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천안시 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⑩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전에 공고한다.
- 제 3 장 사채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회의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회의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 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9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사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회계

제5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특례) 이 정관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16년 08월 03일에 개최된 주식회사 이그잭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른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이그잭스】

<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15. 12. 31 현재

제 16 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3,950,156,359	20,112,341,99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68,899,949	312,790,976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603,522,207	13,958,515,933
3. 기타금융자산	260,000,000	901,000,000
4. 재고자산	3,650,252,094	4,855,051,228
5. 당기법인세자산	4,653,770	6,023,290
6. 기타유동자산	162,828,339	78,960,568
Ⅱ. 비유동자산	41,540,694,941	47,565,220,775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7,262,333	1,117,735,636
2. 기타금융자산	1,348,746,204	587,067,948
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206,983,561	206,983,561
4. 유형자산	31,898,744,856	36,543,401,812
5. 무형자산	5,414,387,753	6,517,527,544
6. 이연법인세자산	2,034,570,234	2,592,504,274
자 산 총 계	55,490,851,300	67,677,562,770
부 채		

Ⅰ.유동부채	28,033,246,241	38,228,654,81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79,746,446	14,880,572,941
2. 차입금및사채	22,263,024,472	22,978,401,974
3. 기타유동부채	190,475,323	369,679,899
Ⅱ.비유동부채	9,284,917,324	20,658,436,902
1. 차입금및사채	7,922,800,000	19,396,055,397
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0,000,000
3. 확정급여부채	1,356,105,339	1,196,369,520
4. 기타비유동부채	6,011,985	6,011,985
부 채 총 계	37,318,163,565	58,887,091,716
자 본		
Ⅰ. 자본금	9,096,295,500	4,344,849,500
Ⅱ. 주식발행초과금	35,021,822,368	23,413,077,639
Ⅲ. 기타자본항목	(14,366,334,924)	(14,519,380,202)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11,579,095,209)	(4,448,075,883)
자 본 총 계	18,172,687,735	8,790,471,05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5,490,851,300	67,677,562,770

<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1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매출액	46,533,021,500	77,415,043,145
매출원가	37,051,450,338	62,436,539,327
매출총이익	9,481,571,162	14,978,503,818
판매비와관리비	11,028,385,704	15,563,457,507
영업이익(손실)	(1,546,814,542)	(584,953,689)
기타순손익	(2,640,689,803)	(8,141,351,061)
기타수익	848,989,925	1,282,387,295
기타비용	3,489,679,728	9,423,738,356
금융순손익	(2,412,204,174)	(3,214,841,565)
금융수익	73,245,189	108,928,586
금융원가	2,485,449,363	3,323,770,15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599,708,519)	(11,941,146,315)
법인세비용(이익)	557,934,040	(28,306,787)
당기순이익(손실)	(7,157,642,559)	(11,912,839,528)

기타포괄손익	26,623,233	(241,705,39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26,623,233	(241,705,391)
보험수리적손익	26,623,233	(241,705,391)
총포괄손익	(7,131,019,326)	(12,154,544,919)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668원)/주	(1,511원)/주
희석주당순이익	(668원)/주	(1,511원)/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